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5.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19.5.3.
- 다. 상정일자: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9.5.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박재숙】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3. 검토보고(전문위원 조회록)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여 감면하였으나, 해당 조문이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